

1.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광복절인 8월 15일에 송달받았다면 송달의 효력은 다음날인 8월 16일에 발생하므로, 행정소송제기의 불변기간의 계산은 그 다음날인 8월 17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총회예정일이 2010년 3월 12일이면, 늦어도 2010년 3월 4일 오후 12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어느 법률이 부칙에서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률이 2009년 11월 2일 공포되었다면, 그 법률은 2010년 2월 3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 ④ 1990년 10월 10일 오전 11시 15분에 출생한 자는 2010년 10월 10일 오전 0시부터 성년이 된다.
- ⑤ 다가오는 2010년 9월 9일부터 1주일까지라고 하면 2010년 9월 15일 24시에 만료된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②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 ③ 승인을 함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④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
- ⑤ 채무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정관에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더라도 관련법규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데, 그 통지서가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④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상대방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통지인인 표의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가정부가 우편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비록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4.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농지를 매수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 ②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6. 행위무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나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 후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법정대리인은 한정치산자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가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자기가 이행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가 악의라도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 ㄴ.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 후임 이사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
- ㄷ.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직무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이사회결의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고,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 ㅁ.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란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8.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금치산자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금치산자보다 거래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계속적 보증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③ 금치산자 또는 파산자가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에 금치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④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하여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몰랐다면 반사회질서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10.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A와 B 두 개의 급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처음부터 B급부가 불능이라면 그 계약은 전부 무효로 된다.
-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매매의 대상에 장차 불하받게 되는 특정의 토지 외에 양도인이 경작하던 간척지에 대한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당연히 양도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가 무효로 될 때도 있고, 그 일부만 무효로 될 때도 있다.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③ 무기명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로 볼 수 없다.

12.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배우자, 재산관리인 등이 있고,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는 그대로 존속한다.
- ④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후에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⑤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만 그 효력이 미치며, 선고절차에 참가한 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13.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14. 甲, 乙, 丙 세 사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그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를 약정할 수 있다.
- ②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재판상 분할의 경우 반드시 甲, 乙, 丙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 ④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⑤ 甲, 乙, 丙 각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15.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부동산을 乙이 불법점유 중인 상태에서 甲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乙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A소유의 부동산 위에 甲의 1번 저당권, 乙의 전세권, 丙의 2번 저당권이 순차로 설정된 경우, 丙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乙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 ③ 甲의 토지위에 乙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를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④ 甲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자전거를 유치하던 중 丙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 경우, 乙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甲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하였는데, 甲이 변제기에 乙에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6. 등기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제3자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등기라 하더라도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자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③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나,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무효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⑤ 말소등기란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7. 乙 소유 토지에 대한 甲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 ② 甲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뿐만 아니라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乙의 주거는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甲이 乙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④ 乙이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그 용법에 따라 바꾸었을 때에는 甲은 乙을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하여야 한다.
- ⑤ 乙은 甲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8.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②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9. 甲은 乙과 합의하여, 甲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소유자는 甲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乙 명의로 해 두기로 하였다. 그 후 乙은 자신의 명의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그 부동산은 甲이 임차인인 것처럼 통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때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물론이며 丙으로부터 乙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 ②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동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乙은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동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甲이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졌다면, 乙이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은 매수자금이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때 甲이 부동산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위 임대차는 통모로 인해 무효가 되고 사용대차관계가 인정되므로, 甲은 乙에게 사용대차계약상의 법조항이나 법리에 의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의 그 재산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②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③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④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 ⑤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 혼동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 ② 어느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된 때에도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또한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후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어느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22. 물상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기타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기 전에 그 금전 기타 물건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되었다면, 저당권자는 그 물상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도, 다른 일반 채권자가 그 금전 기타 물건으로부터 얻은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공동저당권의 실행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위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23. 합유와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이 부동산을 합유하다가 甲이 사망하면, 甲의 상속인과 乙이 부동산을 합유하게 된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각자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4. 자주점유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 ㄴ.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 ㄷ.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
- ㄹ.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있다.
- 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자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25.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甲은 수령한 계약금 1,000만원을 乙에게 제공하고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매매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甲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그 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乙이 甲의 동의하에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라면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6.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② 甲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갈음하여 甲이 乙에게 다른 물건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만약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가 무효로 된다.
- ③ 채무 전부를 변제한 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④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⑤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제3자가 구채무를 위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그 제3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신채무를 위하여 존속시킬 수는 없다.

27.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건물을 2억원에 매도하였다. 이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로 되지만, 甲의 건물인도의무는 乙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 ㄴ. 甲과 乙이 체결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ㄷ. 甲이 乙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乙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ㄹ.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ㅁ. 甲과 乙간에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 甲이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매수인 乙의 대금채무의 변제기일도 도래한 경우, 甲은 乙의 동산인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③ ㄴ, ㅁ
- ⑤ ㄷ, ㅁ

- ② ㄱ, ㄹ
- ④ ㄷ, ㄹ

28.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정부의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X토지가 수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수용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 불능이므로 甲은 乙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를 주장하였어야 한다.
- ④ 乙이 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甲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대상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 X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甲에게 직접 귀속된다.

29.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②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
-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이라도,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⑤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하더라도 채권양도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0. 甲은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무자력으로 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내용을 乙에게 통지한 후 丙이 乙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丙은 변제에 의한 채무의 소멸을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ㄴ. 甲의 채권이 발생하기 전부터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甲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 ㄷ. 乙이 丙에게 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방법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甲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ㄹ.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때에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 ㅁ.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ㅁ
- ⑤ ㄹ, ㅁ

31. 다음 중 판례가 분할채무로 보는 경우는?

- ①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
- ②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 ④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
- ⑤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권원 없이 건축된 건물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32.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 1억원이 있으므로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乙은 丙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丙이 선의인 경우에는 丙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④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위 계약은 매매계약과 이행인수가 결합된 것으로서 이행인수와 관련하여서는 甲·乙·丙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3면 계약이 성립한다.

33. 채무자 乙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 채권자 甲이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의 채무가 예술가로서 甲에 대하여 초상화를 그려줄 채무인 경우, 甲은 乙의 채무의 강제이행을 간접강제의 형태로 할 수 있다.
- ② 乙의 채무가 목수로서 집을 지을 채무와 같이 이른바 ‘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직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은 서로 양립할 수 있으므로, 甲은 이행의 강제를 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④ 乙의 채무가 금전의 지급채무나 물건의 인도채무와 같이 직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乙의 채무가 부작위채무인 경우, 그 위반으로 발생한 결과의 제거는 대체집행에 의한다.

34.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乙은 이를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예정배상액이 甲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실제 손해액보다 부당히 과다하거나 과소한 때라도 법원은 예정배상액을 적당히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
- ③ 甲의 채무불이행 혹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乙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이유로 예정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④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⑤ 예정배상액은 甲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것으로,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5. 甲과 乙이 丙에게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 상호간의 공모 혹은 적어도 공동의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 ② 丙의 이행청구에 의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중단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시효중단된다.
- ③ 丙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丙의 甲과 乙에 대한 각각의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丙의 과실은 甲과 乙 각인에 대한 과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④ 甲이 丙에 대하여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을 얻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때에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

36.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乙이 매매대금채무 중 5,000만원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준소비대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간의 새로운 약정에 의해 매수인 乙이 부담하는 기존의 5,000만원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 ② 차용증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乙의 구두 합의만으로 乙의 차용금반환채무는 성립한다.
- ③ 甲과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乙의 차용금반환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丙이 乙의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했다면 丙의 보증채무는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 ⑤ 乙이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의 소멸시효는 기존의 매매대금채무의 변제기부터 기산한다.

37.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제3자 丙의 방화로 甲과 乙의 과실 없이 그 주택이 소실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 상호간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甲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甲이 대가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甲은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위와 같은 경우에 甲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⑤ 만약 乙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이란 적극적 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어야 할 재산의 감소를 면하는 것도 포함된다.
-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방법으로서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한다.
-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차인이 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에도 그 토지 위에 권한없이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차인은 토지 소유자의 차임 상당의 손해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④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를 진다.
- ⑤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은 세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9.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丙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와 달리 타인의 재산에 대한 증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② 甲이 자신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乙에게 준다고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간의 증여계약은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서 甲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 ④ 甲은 자기 소유의 시가 3,000만원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한편 乙은 甲이 丙에게 부담하는 1,0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실제로 X부동산의 가치가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⑤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도, 甲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0. 회사원 甲은 부족한 결혼 비용을 마련하고자 A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직장 동료인 乙에게 부탁하여 乙이 호의로 보증을 서고, 甲은 A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보증계약은 A은행과 乙 사이에 체결되므로 甲은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乙의 보증의사는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甲이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A은행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乙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3,000만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및 면책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도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甲이 A은행에 채무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乙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하였다면 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